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70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 송갑석·서삼석·전용기

이동주・인재근・문진석

양향자 · 김홍걸 · 민형배

신정훈 · 황운하 · 이장섭

임종성 · 이성만 · 윤후덕

의원(15인)

제안이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2018. 10. 16.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하였음.

그러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는 주관부처별로 각각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따른 법령 필요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 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법률 제 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제10조의3제10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하고,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 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 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 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 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 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 요한 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원회) ① ~ ③ (생 략)	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	4
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	
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	
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u><단서</u>	다만, 제
<u>신설></u>	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⑨ (생 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1 1 1 1 1 1 1 1 1 1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	
위원회가 정한다. <u>다만, 유효기</u>	<u><단서 삭제></u>
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	
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	

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① 제10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 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① ~ ⑭ (생 략)

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 | <삭 제> 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 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특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 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

<삭 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관리 및 감독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삭 제>

 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속히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신 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 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 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 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 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 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①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 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 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 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 을 받아야 한다.
-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 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① 산업통상자원무장관은 산업 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 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10조의6</u> · <u>제10조의7</u> (현행 제10 조의5 및 제10조의6과 같음)

제10조의5 · 제10조의6 (생 략)